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기구 명칭변경 (안 제6조제1항)
 - 「정책혁신담당관」 → 「규제개혁담당관」
- 농업경영인 단체 업무이관 (안 제15조제3호)
 - 「농업기술센터」 → 「출장소 농정과」
- 「호적법」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되어 조문개정 (안 제24조)
 - 호적 → 가족관계등록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시·군 조직개편 지침시달 회의서류('08.5.6 경상북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새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전체 행정기구(課) 수는 변동없이 현행을 유지하고
- 본청 「정책혁신담당관」 부서명칭을 「규제개혁담당관」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「행정혁신 및 지방분권관련 업무」를 「규제개혁관련 업무추진 총괄」로 조정하였음
-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인 「농업경영인 단체업무」를 출장소로 이관하면서
 - 「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」 업무를 출장소 소관사무로 신설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시·군 조직개편 지침('08.5.6 경상북도)에 의거 정부조직의 기능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 임
- 부서 명칭변경 및 부서간 업무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